

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 1998. 12. 26 조례 제 152호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664호
일부개정 2012. 11. 9 조례 제125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2012. 11. 9>

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 본청 실·국장 3인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2. 11. 9>

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(자치행정국장)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 11. 9>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시 분청 담당 관·과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각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(관계전문가 포함)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인정한 긴급한 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2. 11. 9>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규제개혁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7조(규제신고센터의 설치)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5. 10. 5 조례 제664호〉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2. 11. 9 조례 제125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